

중국 CDMA 독자추진 미 웰컴과 특허권 시비

중국이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TD-SCDMA 방식을 추진하면서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웰컴과 TD-SCDMA 진영 간에 특허권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통신 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TD-SCDMA 기술의 상용화를 담당할 산업협력기관을 설립키로 공식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중국의 독자 CDMA 기술의 추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의미 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이통업계에서는 중국이 웰컴과 계약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웰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웰컴은 이에 대해 "중국이 CDMA 원천기술 사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TD-SCDMA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기술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회사의 어원 제이콥스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독일 지멘스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TD-SCDMA도 우리의 CDMA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CDMA 특허는 현재 세계 1억2700만개 이상의 휴대폰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이통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로열티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확대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웰컴의 단호한 주장에 대해 'TD-SCDMA를 공동개발한 중국 다향과 독일 지멘스 등은 이 기술이 웰컴의 특허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멘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TD-SCDMA 기술이 웰컴 특허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면서 "우리가 웰컴 특허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향측도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웰컴의 기술적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만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다향과 후하웨이 등 TD-SCDMA 장비업체가 웰컴에 로열티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할 경우 웰컴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웰컴은 중국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바로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스트만 코닥, 아그파에 특허 침해 소송제기

세계 최대의 사진 필름 업체인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은 경쟁업체인 벨기에의 아그파를 상대로 의학용 X-레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코닥 관계자는 "아그파가 제조한 의학용 X-레이 필름 중 일부가 우리의 T-그래인 사출 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그파를 상대로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아그파가 시간을 단축하며 이미지 질을 높이는 현상기술과 가슴 X-레이용 필름에 사용되는 특수층 형성에 관한 특허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그파는 “우리는 확실한 기술적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그파의 디지털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용 사진을 찍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함으로써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을 폄고 있다.

이에 대해 KTF는 모비고 서비스는 모바일 솔루션업체인 지온네트웍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전에 특허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애드링측의 주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업체가 이전에 통화 연결음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한 바 있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KTF와 적외선 결제업체인 하렉스인포텍간 특허권 분쟁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최근 적외선을 이용한 이동 전화 무선결제 장치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획득했다며 앞으로 특허 사용의 독점권을 행사하겠다며 SK텔레콤·KTF 양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SK텔레콤과 KTF가 추진 중인 무선결제 방식을 포기도록 양사에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하렉스인포텍이 획득한 특허는 광범위한 비즈니스모델로 사업자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 필요하다면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법원에 특허권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대응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동전화 신규서비스 특허권 갈등

이동전화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를 둘러싸고 특허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드링시스템은 KTF가 선보인 모비고 서비스에 대해 자사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장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TF의 모비고 서비스는 기기변경 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새로운 휴대폰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자동저장 서비스다.

애드링시스템은 이 서비스가 휴대폰을 교환할 때 구형휴대폰에 입력돼 있는 전화번호부·캐릭터 등 정보를 신형휴대폰에 이체시켜주는 자사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장치’의 실용신안 방식을 그대로 구현, 특허권 침해 혐의가 짙다는 주장

휴대폰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특허권 시비에 휘말리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휴대폰 특허기술 법정분쟁 잇따라

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모씨는 이날 “천지인(天地人) 방식의 한글자판을 적용한 ‘애니콜’ 단말기를 사용허락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천지인 자판은 96년 한글키보드와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9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삼성전자가 98년 가을부터 사용허락도 없이 천지인 방식을 적용한 단말기를 판매, 현재 판매대수가 3천만개에 이르고 있고, 이로인해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98년 3월께 삼성전자와 ‘한글입력방식 사용계약’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했지만 삼성전자가 최종결제를 앞두고 자사 직원이 유사한 특허를 선출원했으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판을 개발하겠다며 계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천지인 방식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천지인 자판과 관련, 지난 8월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가 “내가 발명한 천지인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자판을 개발한 이상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은 회사소유”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박모씨가 “SK텔레콤이 내가 특허권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1억원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출처 연합뉴스

히타치-전직 연구원 특허소송 분쟁 팽팽 최대 보상금 지급 판결 불구 항소

일본 히타치의 전직 연구원이 광디스크기술 개발과 관련, 거액의 특허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 모두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은 지난 1996년 히타치에서 퇴직한 익명의 기술자.

그는 히타치에 재직하던 지난 1973~1977년에 DVD 등 광디스크의 기록정보를 읽어내는 방법과 관련, 3건의 특허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당시 그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230만엔의 특허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히타치가 해당 기술특허로 전세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라이선스요금 등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약 9억7000만엔을 특허보상금으로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히타치는 이미 지급한 230만엔 외에 한푼도 추가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최근 1심에서 도쿄지법의 모리 요시유키 담당판사는 비슷한 유형의 특허소송으로는 사상최대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시유키 판사는 히타치가 해당 기술특허로 일본 내에서 거둬들인 2억5000만엔의 라이선스 수익 중 일부를 원고가 보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3489만엔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히타치와 원고측 모두가 불복,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히타치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특허권 이양대가로 230만엔을 지급한 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만일 이번 판결이 굳어질 경우 장차 이와 유사한 소송의 전례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우려다. 원고측의 마스나가 히데토시 변호사 또한 항소의사를 밝히고 “법원이 결정한 보상금이 비록 이같은 전에 있어 사상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9억7000만엔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원고 본인도 “젊은 기술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선 너무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국회색특허

대학교수가 야간식별 번호판 특허

깜 깜한 밤에도 차량의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야간식별용 번호판이 개발돼 뺑소니 교통사고를 비롯,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운대(구미시 산동면) 한성욱 교수(45·보건환경학부)는 매년 2만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는데 착안, 지난 1998년부터 개발에 나서 2000년 야간식별 번호판을 발명하고 특허청에 출원한 후 2년만인 지난 4일 최종 특허(제0361267호)를 획득했다.

한교수의 야간식별용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 글씨에 자외선을 쓰면 더욱 빛이 나는 블랙라이트(Black Light) 안료와 빛을 저장하는 알루미나(Alumina·회토류) 계통 안료를 혼합시킨 도료를 칠해 제작한 것. 이번에 특허를 받은 번호판은 기존 차량과는 달리 350~380nm(나노미터)의 자외선 전구를 부착하도록 해 야간에 15m 가까이 떨어져도 쉽게 확인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제작공정이 쉽고, 비용도 저렴한 야간식별용 번호판은 자외선 전구가 소등되더라도 7시간까지 축광이 가능해 시동이 꺼졌거나 조명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번호판의 문자가 선명히 드러난다.

한교수는 “오는 2004년 전국단위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때 미국이나 독일처럼 이같은 번호판 부착을 법제화한다면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수는 야간식별용 자동차 번호판 발명에 앞서 지난해는 눈 피로 보호용 안대를 개발해 특허를 받아냈고, 현재는 야광옷, 야광우산과 함께 까나리 액젓 발효 부산물을 이용한 조미식품 및 제조방법도 특허출원 중에 있다.

출처 매일신문

(판례번호) 무효(상표) 2001.10.12.

제1심원 99후2877 판결

【판시사항】

[TD165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등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문재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고, 상고인】 대한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9허

44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1) 피고는 1955. 4. 22. 인용상표1(상표등록번호 제849호)을 등록출원하여 1955. 7. 11. 그 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1996. 1. 31.까지 여러 차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상품류 구분(아래에서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류에 속하는 맥분뿐이었으나 1997. 3. 21.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9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8. 3. 25. 그 추가등록을 마쳤으며, (2) 1982. 12. 8. 인용상표 2(상표등록번호 제98922호)를 인용상표 1과 연합상표로 등록출원하여 1984. 2. 10. 그의 등록을 마쳤으며, 1994. 10. 28.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그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류에 속하는 마핀믹스가루, 비스켓믹스가루 등의 곡물가루이었으나, 1995. 9. 14.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5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7. 2. 3. 그 추가등록을 마쳤고, (3) 피고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인용상표를 또는 이를 다소 변형한 상표들을 부착하여 밀가루(맥분)를 비롯하여 튀김가루, 부침가루, 도너츠가루, 소맥배아, 식빵가루 등 곡물 분류(粉類)를 생산·판매하여 왔고, 같은 기간 동안 공산권 연구, 황해민보, 한국경제연감, 한중일보, 서울대학교동창회보, 일간스포츠, 매일경제신문, 한국인, 인천상의, 재정, 노인회 소식, 농수축산신보, 한국상품연감 등의 신문, 잡지에 인용상표들이나 이를 약간 변형한 상표들 또는 이를 상표를 부착한 위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4)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88080호)의 상표권자인 원고 문재운은 송학식품이라는 상호로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2년 동안 약 772,928,483원 상당의 국수류와 라면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국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대부분 식품회사이고 제분회사가 국수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 자신도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수를 생산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의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들이나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밀가루 및 곡물가루라고 하면 피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보다 훨씬 늦은 1995. 9. 14. 이후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국수제품에 관한 한, 피고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은 전혀 없는데 반하여,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등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대법관 조무제(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강국

**(판례번호) 무효(상표) 2001.10.12.
대법원 99후1362 판결**

【판시사항】

[TD1606]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 파워 컨버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22. 선고 98허86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1995. 4. 19., 등록시정: 1997. 3. 28., 등록: 1997. 4. 19., 등록번호 제 360194호)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

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 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주심) 대법관 이규홍

발특 2003/1

